

앞으로의 운정프리미엄은 GTX-A로 부터! 우미린으로 붙어!

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Lynn 더 센텀

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참고자료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(주택공급에관한규칙)을 통해 청약자격,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(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제 40조,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)
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----|----|----|---|-----|--|--|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|------|---|--------|---|---|--------|---|-------|----|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|--------|---|--|---|--|--|--|
| 대상자 |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 11.03.)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① 주민등록상 파주시 또는 수도권(경기도,서울특별시,인천광역시)에 거주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포함) 이상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- 대상 세대수의 (50%)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(단,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) 나머지 (50%) 우선공급에서 낙점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) 거주자에 공급 - 경쟁이 있는 경우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”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-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배점표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평점요소</th> <th rowspan="2">총 배점</th> <th colspan="2">배점기준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준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10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미성년 자녀수</td> <td rowspan="3">40</td> <td>미성년 자녀 5명 이상</td> <td>40</td> <td rowspan="3">·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</td> </tr> <tr> <td>미성년 자녀 4명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미성년 자녀 3명</td> <td>3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영유아 자녀수</td> <td rowspan="3">15</td> <td>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</td> <td>15</td> <td rowspan="3">·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</td> </tr> <tr> <td>자녀 중 영유아 2명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자녀 중 영유아 1명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세대구성</td> <td rowspan="2">5</td> <td>3세대 이상</td> <td>5</td> <td rowspan="2">·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·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</td> </tr> <tr> <td>한부모 가족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무주택기간</td> <td rowspan="3">20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20</td> <td rowspan="3">·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·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 ~ 10년 미만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 ~ 5년 미만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해당 시·도 거주기간</td> <td rowspan="3">15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15</td> <td rowspan="3">·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※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 ~ 10년 미만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 ~ 5년 미만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입주자저축 가입기간</td> <td>5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5</td> <td>·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평점요소 | 총 배점 | 배점기준 | | 비고 | 기준 | 점수 | 계 | 100 | | | | 미성년 자녀수 | 40 |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| 40 | ·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| 미성년 자녀 4명 | 35 | 미성년 자녀 3명 | 30 | 영유아 자녀수 | 15 |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| 15 | ·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| 자녀 중 영유아 2명 | 10 | 자녀 중 영유아 1명 | 5 | 세대구성 | 5 | 3세대 이상 | 5 | ·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·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| 한부모 가족 | 5 | 무주택기간 | 20 | 10년 이상 | 20 | ·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·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5 | 1년 이상 ~ 5년 미만 | 10 | 해당 시·도 거주기간 | 15 | 10년 이상 | 15 | ·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※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0 | 1년 이상 ~ 5년 미만 | 5 |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| 5 | 10년 이상 | 5 | ·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| - 이혼이나 재혼인 경우 ① 신청자의 자녀 :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② 재혼배우자의 자녀 :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등 관련 법령에 의함 | | | |
| | 평점요소 | | | 총 배점 | 배점기준 |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준 | 점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계 | 1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미성년 자녀수 | 40 |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| 40 | ·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미성년 자녀 4명 | 3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미성년 자녀 3명 | 3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영유아 자녀수 | 15 |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| 15 | ·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자녀 중 영유아 2명 | 1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자녀 중 영유아 1명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세대구성 | 5 | 3세대 이상 | 5 | ·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·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한부모 가족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무주택기간 | 20 | 10년 이상 | 20 | ·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·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년 이상 ~ 5년 미만 | 1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해당 시·도 거주기간 | 15 | 10년 이상 | 15 | ·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※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년 이상 ~ 5년 미만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| 5 | 10년 이상 | 5 | ·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유의사항 |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-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 (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제 53조 제9호 미적용) -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주택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 (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제40조 제3항) -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. 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※ 본 내용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및 편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